

기획조사 06-035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 (2) : 구주편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요 약

특허권, 저작권, 상표, 디자인 등으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요소이다. 우리 기업들이 점차 세계적인 선진기술을 보유하면서 우리상품에 대한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U로 대표되는 유럽의 경우, 독일, 영국 등 기존 서구유럽에서는 우리기업 및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아 지적재산권 침해피해보다는, 우리기업들이 현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러시아 및 폴란드 등의 동구권에서는 우리기업 및 상품이 높은 인지도와 판매율을 보이는 자동차, 식료품 분야에서 기업명선등록, 모조, 상표도용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침해를 예방하는 차원 뿐 아니라 구주시장의 적극적 진출 및 안정적 시장 확보의 수단으로 지적재산권 획득 및 보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EU 차원의 정책은 아직 초기단계로 EU 각국의 국내정책이 우선 된다.

독일, 영국 등 EU 각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은 잘 구축되어 있으나 제도와 절차가 복잡하므로, 현지 변호사 및 관련 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및 폴란드 등의 중동구 국가들은 서구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도입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취약점이 많아, 동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관련 법률의 숙지와 지적재산권 현지 등록 뿐 아니라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해야 한다.

한편 서유럽 및 중동부 유럽 지역을 초월하여 지적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신기술 혹은 디자인 개발 등과 관련된 서류를 잘 보관하고 정보누출을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적재산권 침해 의혹이 있는 업체 및 제품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EU 각국의 지적재산권 당국 및 세관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다양한 유관기관의 포괄적 지원이 요청된다.

목 차

I. 개 관 /1

II. EU /3

III. 독일 /12

IV. 러시아 /16

V. 영국 /32

VI. 폴란드 /39

VII. 맺음말 /49

I. 개 관

- 특허권(patent), 저작권(copyright), 상표권(trade mark), 디자인권(design) 등으로 대표되는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후부터는 지재권이라 칭함)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요소임.
- 지재권은 분야에 따라서는 오랜 기술 및 경험 노하우의 축적물이거나 집중적 R&D의 산물임.
- 따라서 지재권의 보호는 경쟁자의 무분별한 모방을 방지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WTO 국제무역질서에도 TRIPS(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를¹⁾ 통해 그 중요성이 단적으로 반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과거에 독자적인 기술 및 그 밖의 보호할 만한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지적재산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선진국의 기술 및 상표를 모방함으로써 기술 및 기타 노하우를 축적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우리 기업들도 점차 세계적인 선진기술을 보유하면서 해외시장에서 인지도를 확산 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상품의 지재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해외시장에서 우리 수출품에 대한 지재권 피해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우리상품의 세계시장 선점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임.

1)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조사 대상 국가 : 23개국의 29개 KOTRA 무역관이 주재국에
서의 지재권 이슈를 조사하였음(이 중 본 보고서는 “구주편”
임).

○ 북미 : 미국, 캐나다

○ 유럽 : EU, 독일, 러시아, 영국, 폴란드

○ 아시아·대양주 : 대만, 버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
도네시아, 호주,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 기타 :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 UAE, 이집트

II. EU

1. 개관

□ EU는 위조품 및 해적판 제품을 상품의 유통질서 교란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위조품 및 해적물품의 근절을 위해 국제협약을 기본으로 EU차원에서 지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틀을 마련하고자 각 회원국별 관련법의 조화를 추진하고 있음.

○ 주요 국제협약

-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공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sations)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2005년 10월 EU 집행위는 “EU 신산업정책의 7개 분야” 중 최우선 정책분야로 “지재산 및 상품위조 대응”을 설정했음.

- “EU 신산업정책의 7개 분야”는 지재권 및 상품위조, 에너지, 환경, 경쟁력과 시장접근, 법안의 단순화 프로그램 등을 포괄함.
- “지재권 및 상품위조 대응”과 관련, 구체적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음.
 -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지재권의 중요성 제고를 위해 확고한 보호 체제를 구축
 - 동 분야에서 유럽 산업이 점차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과제에 대해 산업계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개시
 - 지재권 전반에 걸친 진척상황을 재점검하는 한편 여건의 개선을 위한 제안 작성

2. 지적재산권별 보호 현황

가. 특허권(Patent)

☐ “공동체 특허제도” 추진현황

- 현 EU의 특허 보호는 자국 특허시스템과 유럽 특허시스템으로 양분되어 구성됨.
- 특허제도는 각 회원국에 따라 상이하며 특허보호의 비용이 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EU 집행위는 1997년 Green Paper를²⁾ 통해 공동체특허의 설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함.

²⁾ Green Paper on the Community Patent and the Patent System in Europe.

- 2000년 7월 EU 집행위는 공동체특허(Community Patent)의 설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함.
- 2000년 12월 EU 집행위는 공동체 특허법원의 설치에 관한 제안서를 EU 이사회에 제출하였으나, 회원국별 언어문제에 대한 이견과 법원관할에 관한 견해차로 합의에 실패함.
- 2006년 중 EU 집행위는 유럽의 특허시스템 향상을 위한 투자가, 발명가 및 기업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 “공동체 특허제도”의 주요내용

- 공동체 특허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기존 회원국 제도와 유럽 제도의 조화를 추구하나, 궁극적인 목적은 유럽이 민간 연구, 개발(R&D) 투자부문에서 미국과 일본을 추월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 공동체특허 신청은 뮌헨협약(Munich Convention on the European Patent, 1973)의 조항에 따라 이루어지며, 유럽 특허사무국(European Patent Office)이 신청서를 검토 후 “Register of Community Patents” 또는 “Community Patents Bulletin”에 공포함.
- 공동체 지적재산법원(Community Intellectual Property Court)을 설립하여 침해에 대한 재판권을 부여함.

- 침해행위 금지 명령, 침해로부터 나온 제품에 대한 압수 명령, 발명이 사용되어지는 제품 및 물질에 대한 압수 명령, 기타 특정 환경에 부합하는 제재조치 등을 포괄함.
- 회원국 법원은 “Court of Justice”나 “Community Intellectual Property Court”의 판결사항이 아닌 기타 부분에 대한 재판권을 가짐.
-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분쟁발생, Community patent의 강제처분에 대한 징세와 관련됨.

나. 저작권(copyrights)

- ☐ 미디어, 문화산업, 지식산업을 포괄함.
- ☐ 보호기간
 - 문학 또는 미술 저작물 : 저자의 사망, 작가미상의 경우 법적으로 공개된 시점 이후 70년간
 - 영화 또는 시청각부문 : 70년간

다. 상표권 (Trademarks)

- ☐ EU는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의 가입국임.
- 마드리드 의정서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협정으로, EU는 2004년 7월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협약이 2004년 10월1일부로 발효됨.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 출원서를 본국 관청에 제출하면서 보호를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면 본국에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됨.

☐ 공동체 상표권의 주요 내용

- OHIM(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에 상표 등록을 해야만 EU 전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
- 상표 표기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그래픽형태(단어, 디자인, 문자, 숫자, 상품이나 포장형태)로 구성됨.
- 신청서는 회원국 산업재산청 내에 설치된 OHIM이나 Benelux Trade Mark Office에 제출함.
- 공동체 상표권은 EU내에서 상표보호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음.
- 보호기간 : 신청서 제출 후 10년 (10년 이상은 갱신가능)

☐ EU 집행위의 상표권 취득 비용

- 1994년 OHIM이 설립된 이후 2만개 이상의 기업이 상표권 취득을 위해 OHIM을 방문하였으며, OHIM의 행정 간소화 및 서비스개선 노력에 힘입어 비용인하를 결정하게 됨.

- 2005년 10월 집행위는 상표권(Community trade mark) 취득비용 인하를 발표(2005년 11월1일부터 적용) 하였으며, 동 조치로 연간 3,700만-4,000만유로의 비용절감이 예상됨.
- 세부인하 내역 : CTM 신청료 975→900유로, CTM 등록비 1100→850유로, CTM 갱신비 2500→1500유로

라. 디자인권 (Design)

☐ 디자인의 범주

- 새로운(new) 것이어야 하며, 각기 다른 특성(individual character, 기존제품과 달라야 함)을 지녀야 함.

☐ 보호유형

-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 : EU시장 내 등장한 날로부터 3년간 보호됨(시스템적 copying에 대한 보호).
- OHIM(Office for Harmonisation in the Internal Market)에 등록된 공동체 디자인 : 최소 3년, 최대 25년간 보호(시스템적 copying 및 유사디자인의 독자개발에 대한 보호)됨.
 - 등록된 디자인이 보다 공식적이고 보다 포괄적인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OHIM은 미등록 디자인에 대해 책임이 없음.

마. 기타 지적재산권

☐ 실용신안권 (Utility models)

- 1995년 7월 EU 집행위는 단일시장에 있어서 실용신안 보호에 관한 그린페이퍼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1997년 12월 회원국별 법 조화를 위해 지침안을 마련함.
- 그러나 아직 회원국 간의 이견으로 EU 전체차원에서 보호되는 실용신안은 없으며 회원국별로 보호하고 있음.

☐ 생명기술(bio-technology) 발명에 대한 보호

- 집행위는 생명기술 분야에서 특허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명의 법적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함(Directive 98/44/EC, 1998.7월).
 - 그러나 인체, 인간복제 및 유전자변형 과정 등은 특허 가능한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음.

☐ 위조 및 저작권 침해

- EU는 지재권 침해 의혹물품에 대한 세관활동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마련함(Council Regulation (EC) No1383/2003, 2004년 7월1일부터 적용).

- 지재권 침해물품으로 의심될 때 지재권 소유자는 관련 세관당국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동 신청서에는 문제된 제품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기술이 포함되어야 함.
- 지재권이 침해 되었다고 판단되면 회원국법에 따라 세관이 제품을 파기할 수 있으며, 지재권 침해가 정해진 기간 안에 성립되지 않을 경우 물품에 대한 역류는 풀림.
- 지재권 침해로 확인된 물품은 EU 시장 진입이 불가능하며 수출되거나 재수출될 수 없으며, 보세지역에 보관될 수 없음.

3. 침해 구제 절차

☐ 신청자격

- 지적재산권 소유자
- 지적재산권 사용을 허가받은 자(예 : 라이선스를 인가받은 자)
- 지재권 소유자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 단체/기관
- 지재권 소유자를 대표할 전문 변호단체/기관

☐ 저작권/소유권의 추정

- 반박 증빙이 없는 문학 또는 미술작품에 있어서는 작품에 나와 있는 이름이 저작권/소유권 추정자료로 충분함.

☐ 증거확보

- 회원국은 침해당한 측의 합당한 사유에 따라 제소가 있을 경우, 합법기관이 상대방의 증빙자료를 요청하도록 해야 함.

☐ 증거보존을 위한 조치

- 회원국은 합법기관이 소송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침해와 관련된 증거보존을 위하여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회원국은 증인신분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시정조치(Correction measures)

- 회원국은 법기관이 지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유통채널로부터 회수
 - 유통채널로부터 퇴출
 - 파괴
- * 법기관은 동 조치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침해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 금지명령(Injunction)

- 지재권 침해로 판결되면 법기관은 침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침해자에게 강제명령(벌금 등)을 내릴 수 있음.

III. 독일

1. 지적재산권별 보호 현황

가. 관련 법령

1) 특허권(Patentrecht)

- ☐ 독일에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상품이나 기술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발명품 또는 기술로 상업적으로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함.
- ☐ 독일은 최장 20년 동안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개발기간이 장기간인 제약관련 기술은 최장 25년간 특허권을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실시 중임.
- ☐ 한편 특허신청에 대해서 혁신성이 부족하거나 이미 사용 중에 있을 경우 특허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 ☐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독일 특허/브랜드청(DPMA,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에 의해 운영됨.
- 독일의 특허관련 사항은 "depatisnet.dpma.de"를 통하여 신청 및 공개됨.

2) 저작권법(Gesetz ue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 ☐ 문화관련 창조품, 문학작품, 음악, 사진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법으로 저작권자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예방하고 무단 도용을 방지하는 법임.
- ☐ 저작권은 신고나 등록 없이도 원저작권자임을 증명하면 권리가 발생하며 타인의 권리 침해 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 ☐ 2003년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라, 적용 분야는 전통적인 문학, 과학, 음악, 사진, 미술 등은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 디지털 음악 등 최근 발명된 분야까지 망라함.
- ☐ 보호기간은 저자의 사망 후 70년까지이며, 음악 및 사진은 공개된 후 50년이 보편적임.
- ☐ 독일의 저작권법 28항에 따라 독일의 저작권법은 유산으로 상속되어 질 수 있음.

3) 상표법(Gesetz ue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1994년 10월 25일 발효된 법으로, 독일 브랜드와 기타 표시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 15일 개정됨.

- 관련법의 보호대상은 표시, 단어, 사람이름, 디자인화된 스펠링, 숫자, 3차원 형상 등으로 디자인된 사항이며, 기업의 이미지 및 컬러 역시 해당됨.
- 상표등록은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 모두에 해당되며, 특정한 명사의 사용이나 관련 상품에 대한 서술식의 표현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나. 지적재산권 보호기관

☐ DPMA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 독일의 상업적 지재권 보고를 관장하는 연방차원의 특허 및 브랜드 관리 기관임
(<http://www.dpma.de>, <https://dpinfo.dpma.de>).

2. 외국기업의 대응사례

가. 독일 SCHWARZ PHARMA(제소) vs. 이스라엘 Teva(피소)

- ☐ 2001년 독일의 제약회사인 Schwarz Pharma사는 이스라엘의 Generika(모방제약품) 생산업체인 Teva사를 고혈압 치료 관련 특허기술을 도용한 혐의로 미국 뉴저지주 법정에 제소하였음.
- 2005년 1월 Schwarz Pharma사는 승소를 하였으며, 현재 보상금 관련 Teva사와 협의 중임.

- 2002년도 Schwarz Pharma사의 고혈압치료제인 Univasc의 판매액이 5천만달러에서 teva사가 모방치료제를 출시한 이후 매출액이 2004년도 5백만달러로 감소함.
- 손해액이 총 5천만달러를 상회하여, Teva사로부터 2천만달러에서 최고 1억 5천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됨.

나. 독일 • 프랑스 기업 Aventis의 사례

- 2003년 8월 Aventis사는 2012년까지 특허신청이 되어 있는 자사 항암제인 Levenox와 유사한 약품을 생산하는 미국 제약업체를 미국법정에서 고소함.
- Levenox는 Aventis사의 제약품 중 가장 높은 판매고를 보이는 약품으로, 총 매출액이 연간 10억유로에 달함.
- 동 소송으로 유사약품의 FDA인증이 30개월 동안 불가능하여 시장출품이 사실상 차단됨.

3. 유의사항

- 독일의 지재권 관련 법률 및 분쟁절차는 매우 복잡하여, 개인의 소송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독일의 지재권 관련 소송은 기업 내 법무실이나(대기업의 경우), 독일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함.

IV. 러시아

1.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

가.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 내역

1) 개념

- ☐ 러시아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재권이란 지적활동의 결과 및 상업 활동 시 제품 혹은 서비스 등 개별 인식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총칭함.

2) 보호대상

- ☐ 지재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 재산권이란 발명,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상표, 상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미함.
- 저작권 : 문학, 학문, 예술 창작에 관한 권리와 공연, 상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방영권 등에 대한 권리
- 산업 재산권 : 발명권, 실용신안, 의장
-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별화를 위한 도구에 대한 권리 : 상표, 브랜드, 상호, 제품 마크 등에 관한 권리
- 비전통적인 지재권 분야 : 학문적 발견, 논리적 연구 방법 등

3) 지재권 관련 현안

- ☐ 러시아는 공산체제의 붕괴 이후 서구의 지재권 제도를 모델로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일련의 법률을 채택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지재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 받고 있음.
- 러시아의 지재권 보호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선진국형 자본주의의 법 제도와 러시아의 과도기적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전하는) 성격을 띠는 경제 형태와의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음.

4) 지적재산권 취득 개념

- ☐ 지적 재산권의 취득 방법은 일차적 취득과 이차적 취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차적 취득은 다음의 내용을 망라함.
- 학문, 예술, 문학 작품 등을 직접 창작했을 경우 : 산업재산권에 대한 특허 및 증명서를 취득했을 경우
-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학문, 예술, 문학 작품 등을 창작했을 경우 (지적 재산권은 고용주에게 속하게 됨)
- 특허권의 양도 시(특허권 발급전 발급 절차 단계에서 특허권 수령인을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함.
- ☐ 러시아의 특허법 8조 1항에 따르면, 특허권은 발명자 외에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여될 수가 있으며, 이는 발명자가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발생됨.

☐ 지적재산권의 이차적 발생 원인으로는 양도, 인계, 위임, 이전이 있음.

☐ 지적재산권의 이차적 발생은 양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이나 상속 등 법률에 의거하여 발생함.

5) 지적재산권별 보호 현황

☐ 저작권 및 인접권 개념

○ 개념

- 저작권이란 문학, 학문, 예술 창작에 관한 권리이며, 저작권의 인정기준은 창조적인 지적 활동의 산물 여부이며 작품의 가치 혹은 작품의 목적 등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저작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이어야 한다는 특성과 표현에 있어서 객관적인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를 반드시 충족해야함.
- 한편 공연, 상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방영권 등에 대한 권리는 인접권임.

○ 저작권의 종류

- 저작권은 비자산적권리와 자산적권리로 나누어짐.
- 저작자의 비자산적 권리
 - 저작권 :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권한으로, 기타 다른 권한들은 모두 이 권리에서 파생된다고 할 수 있음.

- 저작자에 대한 권한 : 저작자의 이름을 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저작자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필명, 가명 혹은 무명으로 발간 혹은 상영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님.
- 발간 혹은 상영에 대한 권한 : 저작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작품을 발간 혹은 공연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며, 또한 허가 철회권한도 동시에 지님.
- 저작자의 명예 보호권 : 자신의 작품 혹은 공연에 대한 권한 침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님.
- 모든 비자산적 권한은 절대적 소유권을 지니는 것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는 최초의 저작권자만이 지니는 권리이며 저작자의 사후에도 양도될 수 없음.

- 저작자의 자산적 권한 :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재상영에 대한 권한
- 유포에 대한 권한 (판매, 대여에 관한 권한)
-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한
- 텔레비전 혹은 라디오방송을 할 수 있는 권한
- 번역권
- 인터넷 유포권 등의 권한을 지님.

○ 저작권의 연한 :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이며, 다음과 같은 특별조항을 두고 있음.

- 무명으로 공개된 저작권에 대해서는 공개 후 70년까지 저작권이 유효하나, 대중에게 공개 후 저작자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저작자의 생애와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이 유효함.
- 공동 저작권을 지닌 작품의 경우, 최후 생존하는 저작자의 사후 70년 까지 저작권이 유효함.

- 저작자가 죽은 후 발간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발간 후 70년간 유효함.
 - 내전이나 전쟁에 참여한 저작자의 저작권은 통상의 저작권 연한보다 4년을 더 부여함.
-
- 사상, 개념, 원칙, 발견, 사실 등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공적인 서류(법률, 판례, 기타 법적 혹은 행정적 성격을 띤 조문)와 이에 대한 번역본, 국기, 훈장, 지폐의 문안 등 기타 국가적 상징물, 전례 동화, 기타 정보 전달의 성격을 띤 알림서 등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 러시아연방 저작권 및 인접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저작자란 작품을 창작한 개인을 일컬으며, 번역자, 감독, 예술감독 등을 포괄함.
 - 일반적으로 저작자는 개인만 가능하며, 저작권법 제5조 3항에 따라 작품이 국외에서 창작됐을 경우 저작자는 예외적으로 해당국의 법률에 따르므로, 법인이 저작자로 등장할 수 있음.
 - 저작권은 창작물이 일정 형식을 지니기 시작한 시점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
 - 러시아 연방 저작권 및 인접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저작권은 특별한 등록이 요구되지 않으나, 법정분쟁이라는 만일의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저작자 혹은 저작권 소유자는 공증을 받거나 공공기관 혹은 국가기관에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통상적으로 널리 알려진 방법은 러시아저작협회 혹은 그 지부에 등록하는 것이며, 이 경우 등록비용을 납부하고 등록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특허법

- 특허권은 러시아 특허 및 상표국 (ROSPOTENT)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으며,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과 법인에게 주어지게 됨.
- 개인은 러시아 시민, 러시아국적을 지닌 2중 국적자, 외국인, 무국적자를 의미하며, 만14세 미만의 개인명의로 특허 발급 신청 시에는 부모 혹은 법적 후견인이 법적 대리인으로 모든 절차를 수행함.
- 법인은 러시아법인 뿐 아니라, 외국법인도 동일한 권한을 지닐 수 있음.
- 발명특허는 20년 동안, 실용신안은 5년간 유효하며, 특허권자가 신청할 경우 3년까지 연장될 수 있고, 의장에 대한 특허권은 10년으로 특허권자가 신청 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함.
-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차에 걸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서 작성, 특허 설명서, 청사진, 도표,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 및 도안 제출 후 ROSPOTENT의 심의를 거치며, 18개월 후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신청된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발표하며, 특허권 발급하기 전까지 임시 특허권을 발급함.

- 입시특허권상태에서 특허권을 사용할 경우는 별도의 계약이 없으면, 정식 특허권이 발급된 이후에 소급해서 특허사용료를 지불함.
- 특허권의 양도는 POSPOTENT에 등록을 해야 함.
- 특허 신청 자격
 - 특허권 자격을 지닌 개인 및 법인 혹은 그의 대리인, 러시아 지적재산권 관계 당국에 등록되어 있는 변리사
 - 영구 거주지가 국외인 개인과 외국 법인의 경우 변리사를 통해서만 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음.
 - 단 러시아 연방이 조인한 국제 조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영구 거주지가 국외인 개인과 외국 법인도 자체적으로 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는 노어로 작성해야하며, 기타 서류는 노어 혹은 외국어로 작성될 수 있으나, 제출 시 노어번역본을 첨부해야함.
- 특허 심의 절차
 - 심의는 형식 심의와 본 심의가 있음.
 - 형식 심의 단계에서는 서류가 구비되었는지와 그에 따른 요구 조건을 충족했는가에 대한 심의이며, 형식 심의 단계에서 통과 하면,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지됨.
 - 서류 미비의 경우 특허청은 2개월 이내 서류를 보완할 것을 통보하며, 이 기간 내에 서류 보완을 하지 못하면 신청서는 기각이 됨.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신청인 혹은 이해관계인이 관계 당국에 청원을 하거나, 18개월 이내 형식 심의 단계를 통과하면 본 심의에 착수하게 됨.
- 본 심의에 착수 후 6개월 내에 본 심의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발송함.
- 그러나 본심의 중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신청인이 관계 당국의 불승인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러시아국립특허분쟁전담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신청인은 관계 당국에 자신의 특허와 관계된 모든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신청 시 관계당국은 1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복사본을 제공하여야함.

□ 러시아의 상호, 상표 등록법

- 상호는 국가 등록소에 등록 이후 상호에 대한 권리가 주어져며, 상호권을 지닌 회사는 자신의 상호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짐.
- 상호권은 무기한으로 러시아 전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산업 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정 제8조에 따라 협정서에 조인한 모든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
- 상표 등록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에 등록(Rospatent)이 필요한데, 신청서를 Rospatent에 제출하면 연방 산업재산권 연구소(Rospatent산하)가 이를 심의함.

- 신청서 제출은 신청인 본인(개인, 혹은 법인)이 직접할 수도 있으며, 변리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으나, 개인 혹은 법인이 국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변리사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음.
-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인에게 상표에 관한 권한이 주어지며, 파리협정 조인에 따라 다른 파리협정 가입국에서도 상표에 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후 1달은 Rospatent의 형식상 심의 단계로서 필요서류가 구비됐는지 점검하며, 다음 단계에서는 본격적 심의로 이 단계에서 상표등록여부가 결정되는데, 등록 거부 시 해당업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침해 구제 절차

☐ 관련법상 구제 절차

- 러시아의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음.
 - 양자간의 합의
 - 중재원에 의한 해결 방안(단 양자간의 상사중재를 통한 해결 합의가 있어야 가능함)
 - 법원의 판결
- 법원에 고소하는 방법은 최종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지 특허관련 변호사에 따르면 전체 분쟁의 약 25%만이 법원에 의해 해결되고 있음.

- 법원판결의 경우, 소송시작 후 1-2년 뒤에 최종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업 혹은 개인이 감수해야할 기회비용이 크며, 최종 결과 직전까지 침해자는 모조품을 유통시킬 수 있음.
- 통상 모조품은 진품에 비해서 품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며 덤핑판매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음.
- 또한 침해자는 협상거부, 회피, 도피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과 처벌에 집착하기 보다는 사업에 해를 끼치지 않을 방안을 찾아 협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
- 법원의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판결을 공표할 수 있으며 침해자의 비용으로 불법 마크가 부착된 티켓, 포장 등을 회수할 수 있음.
- 러시아가 가입국으로 참여한 국제 협약에서 러시아 연방 법과 상이한 규정이 있을 경우, 국제 협약이 우선 적용됨.

☐ 중재를 통한 방법

- 중재원(arbitration court or arbitrage)
 - 중재원은 비사법기관으로서 침해되거나 논쟁 중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임.
 - 중재원을 통한 분쟁 해결 방안은 중재인들의 전문화, 중재인의 선임 가능, 신속성 및 비용 절감이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중재원에 의한 해결에 대한 양자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함.

○ 국제 상사중재법원

-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 산하에 있으며, 비사법적 분쟁해결 기관임.
- 이 기관은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국제 상사 분쟁을 잘 수행함으로써 좋은 평판을 얻고 있음.

□ 법원을 통한 방법

- 러시아 개혁 이후 사법제도는 헌법재판소, 일반법원 및 국가사법기관의 일부로서 국가중재법원이 존재하고 있음.
- 일반법원은 행정상의 문제로 발생한 국가와 국민사이의 분쟁 및 형사상의 분쟁 등을 해결하며, 이에 비해 법인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경제 분쟁 문제는 국가중재법원이 해결함.
- 러시아 국가중재법원은 일반법원에 비해 전문적이며 신속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 재판 기간이 일반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는데, 현행 중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후 2달 안에 판결함.
 - 또한 판사는 각각 자기의 전문분야를 특화시켜 해당 분야의 사건만을 맡기 때문에 판결의 전문성도 기대할 수 있음.

<참고> 국가 중재 법원 절차

1. 소의 제기
2. 5일 이내 서류 구비에 대해 심사
3. 접수 후 2개월 심리 준비
4. 1개월 이내에 판결
5. 1개월 이내 항소 가능
(판결 결과는 항소기간 만료시점에 발효)
6. 항소시 1개월 이내에 항소 결의 내려져야함
(항소결과는 판결직후 발효)
7. 항소심에 불복 시 항소결과 발효 후 2개월 이내에 재심 신청 가능
8. 재심접수 후 한달 이내 최종판결이 나와함

2. 외국기업의 대응 사례

가. 러시아 Press(제소) vs. Starbucks(피소)

☐ 진행과정

- 1997 : 미국 Starbucks사 러시아에 상표권을 등록함.

- 2002 : 러시아 PRESS사에서 커피류에 등록된 Starbucks 상표의 등록 말소를 신청함.
 - 동 등록 말소 신청은 러시아에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였으나, 연속적으로 3년간 사용하지 않았고 제3자가 등록 말소신청을 할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는 법령을 근거로 함.
- 2004 : 러시아 Press사에서 다른 상품군에 등록되어 있는 Starbucks사 상표도 무효화를 신청함.
- 2005.7 : Starbucks사 러시아국립특허분쟁 전담기관에 러시아 Press사의 권한 무효를 요청함.
- 2005.8 : 러시아 중재법원은 Press사의 권한 무효 금지 명령을 내렸고, 동사는 미국 Starbucks사에 대해서 특허사용료 60만불을 요구하였음.
- 2006.3 : 러시아 기업윤리연합회는 Press사의 행위를 비윤리적행위로 단정하고, 기업가협회 등 관련 회원사에게 동사와의 협력을 하지 않도록 권고함.

□ 시사점

-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인 Starbucks사 조차도 복잡한 러시아 현지의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러시아 진출의 걸림돌을 경험한 것을 보여줌.

- 따라서 러시아진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현지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련 법령 등의 숙지가 필요함.

나. 러시아 Vedomosti(제소) vs. 러시아 Erweka(피소)

☐ 진행과정

- 러시아 유력 일간신문사인 Vedomosti사는 러시아의 인터넷 신문인 Erweka사가 자사의 기사를 자료원 인용 없이 인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함.

- 2005년 12월 중순에 Erweka사에 기재된 100건 이상의 기사가 Vedomosti사에서 인용된 것이었다고 주장함.

- 해당 손해배상금으로 2억57백만루블(약 미화 9백만불)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Erweka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하여 놓은 상태임.

☐ 시사점

- 오프라인 정보뿐 아니라,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저작권침해 예방 조치가 필요함.

3. 유의사항

□ 현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법령준수

- 러시아는 불법 복제물로 인한 자국 제조업 기반의 약화, 창작활동의 저해 및 국제 사회에서의 부정적 인식 증가를 막기 위하여, 불법 복제에 대해 처벌 및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진출 이전에 현지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 현지 생산이 없는 대기업의 경우, 러시아 자체 내의 모조품 발생 가능성은 적은 반면, 자사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등록 및 관리를 통하여 외국 기업이 현지 법률에 밝지 못한 점을 이용한 지재권 침해 등을 사전에 예방해야함.
- 현지 생산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 러시아내에 경쟁사 혹은 제품 모방 능력이 있는 업체가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기술 유출 및 신제품 출시 정보 유출 등에 대비하여야 하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 감시를 통해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현지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검증을 위한 제약이 많으므로, 거래 바이어를 통한 현지 시장 동향 및 현지 회사의 특허권 침해 예방이 필요함.
- 특히 러시아의 경우 관련 법령이 자주 개정되므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필수적임.

<러시아 특허청 및 저작권 협회 담당부서 연락처>

※ 러시아 특허청 주요 연락처

부서명	연락처
안내전화	7-495-240-60-15
컨설팅	7-495-240-58-42
상표 심의과	7-495-240-33-75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록과	7-495-240-63-54
서류 검열과	일반문의 7-495-243-49-22 세금문의 7-495-240-58-80
잡지 발간과	7-495-240-30-11
잡지 편집과	7-495-240-32-28

※ 주소 : 123995, Berezhkovskaya Nab., Dom

30, Korpus 1, Moscow, Russia

E-mail: rospatent@rupto.ru

홈페이지: <http://www.rupto.ru>

※ 러시아 저작권 협회 (RAO)

주소 : 123995. Moscow, B. Bronnaya, 6A

Tel : 7-495-203-3777

Fax. 7-495-200-1263

E-mail: rao@rao.ru

V. 영국

1.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

가. 관련 법령

☐ 특허권(Patents Act 2004)

- 최장 20년 동안 특허권을 인정함.
- 특허신청에 대해서 혁신성이 부족하거나 이미 사용 중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특허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 저작권 및 디자인(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98)

- 음악, 문학 등의 경우 저자 사후 70년간 저작권이 보호됨.
- 공연가, 레코드 프로듀서, 방송 프로그램 권리는 50년간 보호됨.
- 저작권은 신고나 등록 없이도 원저작권자임을 증명하면 권리가 발생하며, 타인의 권리 침해 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 상표권(Trade Marks Act 1994)

- 상표권은 신규 등록 후 5년 이내에 제3자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영구히 권리가 보유 가능함.
- 10년 단위로 갱신됨.

- 상표등록은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 모두에 해당되며, 특정한 명사의 사용이나 관련 상품에 대한 서술식 표현은 허용되지 않음.
- 상표권 침해가 악의적일 경우 최장 10년간의 징역이 가능한 형사사건으로 다루고 있어 지재권 범주 중 가장 보호가 강력한 부문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상표권 위반 사례가 익명 생산자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제품의 수입 금지나 상표권 침해제품의 몰수 등으로 단순 사후 조치되고 있음.

☐ 디자인 등록법(Registered Designs Act 1949)

- 등록된 디자인 권리는 5년간 유효하며 4회에 걸쳐 갱신 가능하여 총 20년간 보유 가능함.
-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원소유권자 여부에 대한 판별을 거쳐 보호되고 있음.

나. 지적재산권 보호기관

- ☐ 영국 통산부(DTI) 산하 특허청(The Patent Office : www.patent.gov.uk)에서 관장함.

* 특허청 주소 : The Patent Office, Concept House
Cardiff Road Newport South Wales NP10 8QQ, UK

* 특허청 내 저작권 담당 사무소(런던) : The Patent Office
Harmsworth House 13-15 Bouverie Street
London EC4Y 8DP, UK
* 인콰이어리 의뢰 : The Central Enquiry Unit
Tel: +44 (0)1633 813930
Fax: +44 (0)1633 813600
Email: enquiries@patent.gov.uk

다. 구제절차

- ☐ 지재권 침해가 발생하면 이해 당사자간 민사소송으로 해결되며 피해당사자는 소송 제기전 6년간 누적 총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
- ☐ 예외적으로 상표권의 악의적인 침해는 최장 10년간의 징역이 가능한 형사사건으로 다루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됨.
- ☐ 그러나 영국은 EU 차원의 "A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Directive(IPRED)"를 제정, 특허 위반 사례를 향후 형사 사건화 하는 등의 특허 보호를 추진 중임.

2. 외국기업의 대응사례

가. Apple Corps(제소) vs. Apple Computer(피고)

- ☐ 1978년 Apple Corps(비틀즈가 설립한 레코드 회사 겸 지주회사)가 애플컴퓨터에 대해 자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촉발됨.

- 1981년 Apple Computer사가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8만불의 손해배상금액을 지불하는 한편, 영국 내 음악사업에서 영원히 철수하는 조건에 합의하여 사건이 종료됨.
- 1986년 Apple Computer사가 MIDI와 음원녹음기능을 자사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장착하고 영국 내 판매를 개시하자, 1989년 Apple Corps가 1981년 양사간 상호합의내용 위배를 사유로 소송을 제기함.
 - Apple Computer사가 상표권 위반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양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Apple 상표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2,650만불을 Apple Corps에 지불하고 소송을 종료함.
 - 동건은 Apple Computer 사내에서 기술개발 담당인력과 법제담당 인력의 정보 교환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임.
- 2003년 Apple Computer사의 MP3 관련사업인 iTUNE과 iPOD의 영국 론칭으로 Apple Corps사가 다시 소송을 제기함.
 - 올해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며,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양사가 1989년 합의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Apple상표권 사용 허용”에 대한 해석 관점에 따라 극명하게 예상평이 나뉘고 있음.

나. Apple Computer(제소) vs. 영국 Benjamin Cohen(피고)

- 2000년 11월, Cyber Britain(<http://www.cyberbritain.co.uk>)의 벤자민 코헨은 MP3 서치엔진 도메인 명목으로 "itunes.co.uk"를 영국 도메인 등록협회에 등록하였으며, 이후 오랜 시간 미사용 하였음.
- 애플 컴퓨터사는 2001년 3월 영국 특허청에서 ITUNES라는 상표권을 음악산업 외 사용조건부로 획득하였으나, 2004년에 영국에서 iTunes Music Store 서비스를 개시함.
- 이후 Cohen이 "itunes.co.uk"의 도메인네임을 재활성화하고 자신의 현금보상서비스 관련 웹사이트인 Cyber Britain (<http://www.cyberbritain.co.uk>)에 사용권리를 이관함으로써 상표권 분쟁의 단초를 제공함.
- 애플컴퓨터는 "iTunes"의 상표권 사용 권리는 자사에 있다는 이유로 영국 도메인 관리청(Nominet UK)의 분쟁조정위원회에 Cohen의 "itunes.co.uk" 웹사이트 사용금지 처분을 요청함.
- Cohen은 영국 정부가 다국적기업에 편향되게 판정하려 한다고 언론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호소하는 한편, 영국 법원에 정식 제소를 함.
- 소송 청원은 1차로 기각된 바 있으며 재청원 과정 중에 영국 도메인 관리청이 자체 기술심사를 거쳐 잠정적으로 "itunes.co.uk"를 Apple사에 이관함.

- Cohen이 2005년 12월 Apple사에 대한 모든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분쟁이 종료됨.

다. Epson(제소) vs. 영국 Medea International(피고)

- 2006년 2월 22일, PC용 프린터 전문회사인 Seiko Epson은 자사의 프린터와 호환성이 있는 Medea International의 잉크 카트리지인 InkRite PhotoPLUS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함.
- Epson은 InkRite PhotoPLUS에 포함된 “Spongeless valve design”이 Epson의 특허인 “Smart Valve Technology”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Medea International은 기술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사례가 없으므로 Epson의 특허침해소송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자사 입장을 밝힘.

라. Harrods of Knightsbridge의 도메인명 침해 피해 사례

- 영국의 Harrods 백화점이 영국 고등법원에서 한 영국인이 미국의 NSI에서 얻어낸 ‘Harrods.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포기하도록 소송을 제기함.
- 1995년 이전에 NSI는 도메인 이름에 대해 ‘선착순 원칙’을 적용했으므로, 사람들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 그들이 ‘이름을 소유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었음.

- Harrods는 자사가 영국 특허청에 등록한 Harrods상표가 도용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승소 판결을 얻어냄.

3. 유의사항

- 영국의 특허 및 상표권 등 지재산 관련 법률 및 분쟁절차는 매우 복잡함으로 특허와 상표권 등록 및 갱신에는 관련 에이전시의 활용이 적극 권장됨.

VI. 폴란드

1.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

가. 개관

- 폴란드에서 지재권은 크게 저작권(copyright)과 특허권, 상표, 디자인 등을 망라하는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으로 이해됨.

○ 지재권의 구성

구분	내용
Copyright	Motion Picture, Business Software, Entertainment Software, Books, Records & Music
Industrial property	Trademark
	Patent
	기타: Design, Invention, Formula 등

- 폴란드의 지재권 보호는 최근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국 스페셜 301조의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임.

○ 미국의 ‘2005 스페셜 301 보고서’에 의하면, 폴란드의 지재권 보호에서 미흡한 점은 다음과 같음.

-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가 부족한데 특히, 보건부와 특허청 사이의 협력 부족으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등록 규제에 문제가 있음.

- 불법(해적판) 제품의 유입 지속 : 광학미디어제품(CD, DVD, CD-ROM),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 폴란드에서 불법복제 또는 해적판 제품의 성행은 지재권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라는 평가임.

-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폴란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율은 59%로, EU에서 그리스(62%)에 이어 2번째이고 주변 체크(41%), 헝가리(44%), 슬로바키아(4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EU평균은 35%).

나.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 내역

1) 저작권 · 판권(copyright)

□ 대상

- 인간의 창의적 활동의 표현으로, 물질적인 형태로 구현되어야 함.
 - 영화(Motion Pictures)
 - 비즈니스용 소프트웨어(Business Software)
 - 엔터테인먼트용 소프트웨어(Entertainment Software)
 - 레코드 및 음악(Records & Music)
 - 서적(Books) 등

□ 보호기간

- 상기와 같은 작업물은 제작 순간부터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며, 완전하지 않은 형태라고 해도 보호의 대상이 됨.
- 저작권은 작자의 사후 70년간 보호됨.

□ 처벌규정

- 저작권 침해행위는 형사 및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됨.
 - 형사상으로는 5년까지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민사상으로는 손실이나 로열티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의 배상 등이 있음.

□ 저작권에 대한 침해는 경찰 및 검찰이 직권으로 수사 또는 단속을 하며, 민사상의 고소나 고발도 가능함.

- 폴란드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 실행이 비효과적이란 지적이 많으나, 최근 들어 노천시장 등지에서 판매되는 해적판(CD, DVD, CD-ROM 등이 대표적)에 대한 단속이 진전을 보고 있다는 평가임.³⁾

3) 동쪽 및 북쪽 국경(벨라루시, 우크라이나, 러시아)을 통해 대거 유입되는 해적판 제품을 규제하는 것도 앞으로 과제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

2)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 관련기관

- 폴란드 특허청 (PPO; The Patent Office of the Republic of Poland) (www.uprp.pl)

☐ 적용대상

- 매우 방대한데 상표, 특허를 비롯하여 발명, 제조법 (formula), 디자인 등을 망라함.

☐ 상표 (trademark)

- 상표란 그래픽적으로 표현된 표식으로, 동 표식은 한 기업의 제품을 다른 기업의 제품과 구별되게 할 수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 상표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 구성됨.
 - 단어 (Word/s)
 - 그림 (Picture)
 - 패턴 (Pattern)
 - 색상의 조합 (Color composition)
 - 공간적 형태 (Spatial form)
 - 멜로디 또는 소리 (Melody or sound)
- 상표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폴란드 특허청(PPO)에 등록을 해야 함.

- 폴란드에 등록법인이 없는 기업의 경우 특허관련 에이전트를 통해 상표 등록이 가능함.
-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같은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신청서 양식, 등록할 상표, 수수료 등을 제출해야 함.
 - 등록 소요기간은 약 2년이나, 상표는 신청시점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등록관련 세부정보는 www.uprp.pl 참조).
- 상표는 특허청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연장 가능함.
- 다음과 같은 경우 상표권의 침해로 간주함.
 - 동일제품의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한 마크의 사용
 - 동일 또는 유사제품의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마크 사용으로 소비자를 오도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유명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마크의 사용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등록상표의 독특한 성격이나 명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상표 침해에 대한 입증은 상표권 보유자가 하게 되어 있으며, 침해를 받은 자는 침해제품의 판매 중지, 불법상표를 통해 얻은 혜택의 양도, 피해 보상,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특허권 (patent)

- 특허권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새로운 솔루션 또는 기술 + 발명적 요소 + 산업 용도로 사용 가능”.
-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폴란드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함.
-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신청서(폴란드어), 부대서류(관련 명세서, 개요 및 드로잉 등), 수수료 등을 첨부하여 특허 신청을 해야 함.
 - 정식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3~4년이 걸림.
-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됨.

다. 침해 구제 절차

□ 저작권

- 저작권 침해 행위는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저작권 침해를 당한 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경찰은 이를 수사하고 단속할 수 있음.
- 침해 증거에 근거하여 저작권 보유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특허권 및 상표

- 특허권이나 상표 침해에 대한 입증은 동 권리 보유자가 하게 되어 있음.
- 특허권, 상표 보유자는 침해를 행한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권리 침해에 대한 최종 판정은 법원에서 행함.

2. 외국기업의 대응 사례

가. LEGO(제소) vs. COBI(피고)

- ☐ 1992년 폴란드 제조업체 COBI사가 덴마크의 세계적 블록완구 제조업체 LEGO의 제품과 매우 유사한 블록 완구를 판매하기 시작함.
- ☐ LEGO는 COBI의 블록이 (소비자를 오도할 정도로)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판매 중지와 함께 공개 사과를 요구했음.
- ☐ 1999년 LEGO는 1심 및 항소심에서 패배하였고, 2003년 대법원 3심에서도 최종적으로 패소함.
- 법원 판결의 사유를 보면, 독점 생산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특정한 제품을 모방할 수 있는 기업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경쟁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임.

- LEGO사와 폴란드 업체 간의 블록 완구를 둘러싼 지적재산권 분쟁은 10여년을 끌어 왔다가 최종적으로는 LEGO의 패소로 일단락 됨.

나. Unilever (제소) vs. 폴란드 Gallod(피고)

- 1990년, 세계적인 기업 Unilever는 폴란드에서 Magnum 아이스크림을 상표로 등록하였음. 이후 폴란드 중소기업 Gallod사는 Magnat이라는 아이스크림을 집중적인 광고활동과 함께 출시하였음.
- Unilever사는 Magnat 아이스크림이 자사의 Magnum 아이스크림과 이름 및 로고가 매우 유사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Gallod사가 Magnum사의 명성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함.
- Unilever사는 해당 아이스크림들의 이름이 너무 비슷한 전형적인 도용이라고 주장하며, Magnat의 상표 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함.
- 그러나 폴란드 특허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이름과 단어의 의미가 다르다고 답변했으며, 법원에서도 특허청의 결정을 지지함.
- 결국 아이스크림 상표를 둘러싼 분쟁에서 Unilever사는 Magnat사가 자사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 한 것임.

다. Braun사의 사례

- 2003년 2월, 폴란드 세관은 Brown 상표를 부착한 수입 가전 제품을 압수한 바 있는데, 가전제품 메이커인 Braun은 이러한 제품의 시장 퇴출과 함께 침해업체가 위법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를 요구함.
- 2005년 10월, 폴란드 대법원은 Braun과 'Brown'이라는 폴란드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2개 업체 사이의 분쟁에서 Braun사의 승소를 판정함.
- 법원은 피소업체 제품과 Braun제품 사이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Brown 상표의 사용이 원 제조업체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Braun에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임.

4. 유의사항

- 저작권 등 폴란드의 지재권 보호 법규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며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 높지 않음.
- 따라서 기업들은 지재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필요가 있는데, 특허권이나 상표 등록 등을 가급적 빨리 추진하는 것이 요망됨.
- 등록 미비는 추후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 지재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 검찰 또는 법원에 통보해야 함.
- ☐ 또한 지재권 침해와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 등의 자문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 EU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경우, 커뮤니티 상표 (Community Trademark)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EU 전역에 걸쳐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VII. 맺음말

- 지재권 분야는 EU차원의 법규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분야로, 회원 각국의 국내제도가 조화되도록 추진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상이한 분야임.
- 독일, 영국 등 기존 서구 국가들에서는 우리 기업 및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지재권 침해 피해 사례가 파악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EU시장의 적극적 진출 수단으로서 지재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서구 국가들은 엄격한 지재권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관련 법규 및 분쟁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현지의 변호사나 관련 에이전시를 활용하는 것이 장려됨.
- 러시아, 폴란드 등의 옛 공산권 국가들의 경우, 서구의 지재권 제도를 도입하고 지재권 침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동구권 지역은 제도의 이행에 있어 여전히 취약점이 많아 동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숙지와 지재권 현지 등록 뿐 아니라,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해야 함.
- 지재권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처벌이 수행되어야 하나, 러시아 및 동구권에서는 정부의 관료주의와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여전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기업 차원에 있어 서구 및 동구지역을 초월하여 궁극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신기술 개발 등 지재산 관련 자체 서류를 잘 보관하는 한편, 정보 누출을 철저히 예방하는 것임.
- 한편 체계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재산 침해 의혹이 있는 업체 및 제품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EU 각국의 지재산 당국 및 세관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다양한 유관기관의 포괄적 지원이 요청됨.
 - 특히 지재산 분쟁을 겪고 있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이 상담하고 문의할 수 있는 국내 전담창구가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정부간 협약을 통한 지재산 상호 보호 및 구제장치 마련도 추진되어야 하겠음.

작 성 자

◆ 런던 무역관	임성환 차장
◆ 바르샤바 무역관	김삼식 과장
◆ 모스크바 무역관	김정훈 과장
◆ 브뤼셀 무역관	김명희 과장
◆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윤현철 과장
◆ 해외조사팀	신순재 과장